

ER-315-26

## 대학원 생활관생활수칙

[제 정	1997. 01. 16]
[1차개정	1999. 02. 02]
[2차개정	2000. 01. 28]
[3차개정	2004. 08. 10]
[4차개정	2010. 03. 26]
[5차개정	2012. 12. 03]
[6차개정	2012. 12. 26]
[7차개정	2015. 11. 09]
[8차개정	2020. 07. 02]
[9차개정	2022. 06. 30]

제1조(목적) 이 수칙은 “대학원 생활관 운영지침” 제7조에 의거 대학원 생활관(이하 “생활관”이라 한다) 입사자(이하 “입사생”이라 한다)가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12. 03, 2020. 07. 02>

제2조(적용범위) 이 대학원생활관 생활수칙(이하 “수칙”이라 한다)은 모든 입사생에게 적용한다.<개정 2020. 07. 02>

제3조(생활규범) 생활관은 일과후 휴식의 공간임과 동시에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동심과 자립정신을 기르고 준법정신과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화하면서 학문의 성취와 함께 인격도야에 정진하는 수양의 장이어야 한다.

제4조(입사 우선순위) ① 생활관의 입사 우선순위는 “대학원 생활관 운영지침” 제13조, 제15조에 의한다.<개정 2020. 07. 02>

② 위 동순위 신청자의 수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추첨 또는 생활관 점검 및 상별 결과에 따라 입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.<개정 2000. 1. 28, 2020. 07. 02>

③ 단, 본원의 학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생활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위 항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.

④ 삭제 <2020. 07. 02>

제5조(의무사항) ① 입사생은 수칙과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07. 02>

② 관내에서는 절대 정숙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입사생은 침실의 청결 및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야 한다.

④ 입사생은 각종 사고(화재, 도난, 안전 등) 및 전염병 확산 등에 대한 주의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07. 02>

⑤ 입사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생활관 시설을 보호 유지하고 대여받은 물품을 관리·보존하여야 한다.

⑥ 입사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입사 및 퇴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⑦ 입사생은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직원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하

여야 한다.

제6조(실 이동 금지) 입사생은 임의로 실을 이동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실이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 이동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 담당 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1999. 2. 2, 2020. 07. 02>

제7조(출입제한) ① 남·여학생은 사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제반시설을 상호출입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활관 직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.

② 타인의 방에서 숙박할 수 없으며, 사용자의 승인없이 타인의 방에 출입할 수 없다.

제8조(공용물 사용) ① 생활관내의 모든 공용물품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
② 세탁은 지정된 세탁실을 이용하여야 한다.

③ 실내에서의 다리미 사용은 관리실에서 대여 받은 공용 물품으로 제한하며 사용시 화재 예방에 특히 유의하여 사용하고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<개정 2004. 8. 10>

제9조(변상책임) ① 입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의 시설, 대여 받은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열쇠의 분실로 야기되는 자물쇠 교체 비용 및 모든 책임은 열쇠 분실자가 진다.

제10조(광고 및 게시) ① 광고 및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한다.

② 모든 게시물은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보고 철거할 수 있다.

제11조(통보의무) 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생활관 운영담당 부서나 관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시설, 물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
2. 화재, 도난, 응급환자, 기타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
3. 전기, 수도, 스팀 등의 고장이나 시설, 물품 등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
4.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

제12조(금지사항) 입사생은 생활관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. 위반시 제16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.

- ① 생활관 사용권의 양도, 외부인의 숙박, 기타 유사한 행위
- ② 시설 및 대여물품의 임의이동, 원형변경 및 목적 외 사용행위
- ③ 건물 내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행위
- ④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, 고성방가 행위 <개정 2015. 11. 09>
- ⑤ 전열기, 난방기구, 취사도구 등의 부당 사용행위, 단 전기장판의 경우 온열치료의 목적으로 사용중에만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는 제외<개정 2012. 12. 26>
- ⑥ 절도, 도박, 영리 등 파렴치한 행위
- ⑦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괴 또는 방화 행위
- ⑧ 기타 생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불미스러운 행위
- ⑨ 호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<신설 1999. 2. 2>
- ⑩ 차명, 대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호실을 독점하는 행위<신설 2004. 8. 10>

- ⑪ 절도, 폭행, 방화, 성폭력 등 범죄행위<신설 2012. 12. 26>
- ⑫ 생활관 공용공간에서의 음주 행위 <신설 2015. 11. 09>
- ⑬ 천재지변,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원의 정당한 주의 및 예방 조치를 방해하거나 관련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행위<신설 2020. 07. 02>
- ⑭ 기타 공동생활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<신설 2020. 07. 02>

제13조(관리) ① 입사생은 각자의 방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,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입사생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청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- ③ 입사생은 호실 내에서 시설물, 집기류의 배치형태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1. 출입문을 개방하여도 실내가 보이지 않게 되는 배치형태
2. 화재 등 기타 위급사항 발생시 동선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배치 형태

④ 입사생은 호실내의 시설물, 집기류를 실외로 이동시킬 수 없다.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이동할 수 있다.<신설 2004. 8. 10>

제14조(점검) ① 총장 또는 처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생활관의 안전관리 및 건전한 생활관 문화형성을 위하여 인원, 시설, 위생, 생활상태 등을 점검한다. <개정 1999. 2. 2, 2010. 03. 26, 2020. 07. 02>

- ②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00. 1. 28, 2020. 07. 02>
- ③ 합동점검은 본원의 안전관리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서와 함께 실시한다.

제15조(퇴사) ① 입사생이 퇴사하고자 할 때에는 퇴사예정일 1주일 전까지 퇴사원서를 운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입사자가 퇴사할 때에는 대여받은 물품을 반환한 후 퇴사검열을 받아야 한다.
- ③ 출장 등의 사유로 복귀를 전제로 하여 생활관에 2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, 거주자는 관련 사항을 관리실에 통보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생활관비를 선납하여야 한다. 불이행시에는 담당부서장의 직권으로 강제 퇴사조치 할 수 있다.<신설 2004. 8. 10>
- ④ 퇴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입사생의 개인물품은 생활관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,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퇴사절차 미이행자 본인에게 있다.<개정 2004. 8. 10>
- ⑤ 일정기간 퇴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입사생은 담당부서장의 직권으로 강제 퇴사조치 할 수 있다.<신설 2004. 8. 10>

제16조(징계) ① 생활관 운영지침 및 수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대하여는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퇴사의 징계를 할 수 있다.<개정 2020. 07. 02>

- ② 징계는 처장이 행한다.<개정 2000. 1. 28, 2020. 07. 02>
- ③ 생활관내에서의 위반 내용에 따른 징계 및 별점부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.
- ④ 별점 누적자에 대한 조치는 별표 2와 같다.<개정 1999. 2. 2>

제17조(포상 및 상점) ①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 여건 및 환경개선에 기여한 입사생에게

는 포상할 수 있다.<신설 1999. 2. 2>

②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입사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그 상점으로 별점을 감할 수 있으며 상점내용은 별표 3과 같다.

③ <삭제 2020. 07. 02>

④ 기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개정 2020. 07. 02>

부 칙 <1997. 1. 16>

①(시행일)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수칙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수칙에 의하여 제정,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1999. 2. 2>

①(시행일)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0. 1. 28>

①(시행일)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수칙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수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04. 8. 10>

①(시행일) 이 수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0. 03. 26>

①(시행일) 이 수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12. 03>

①(시행일) 이 수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12. 26>

①(시행일) 이 수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11. 09>

①(시행일) 이 수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07. 02>

①(시행일) 이 수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 06. 30>

①(시행일) 이 수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00. 1. 28, 2012. 12. 26, 2015. 11. 09, 2020. 07. 02, 2022. 06. 30.>

### 별 점 기 준

위 반 내 용	별 점
1. 화재를 일으킨 자(방화) 2. 절도, 폭행, 성폭력, 공용기물 파손 등 범죄행위자(중대한 경우) 3. 음주 등으로 인한 폭행사건 당사자 및 가해자(중대한 경우) 4. 퇴사절차(유지검사 포함)를 이행하지 않은 자 5. 이성(異性)간의 혼숙을 하는 자 6. 네트워크를 이용한 바이러스 고의유포, 불법파일 공유서버 설치 운영, IP 무단도용, 해킹 등 전산망 교란행위자(중대한 경우) 7. 생활관 담당 팀장의 허가없이 사용권을 양도하는 자	50
8. 차명, 대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호실을 점유/독점하는 자	40
9. 화재를 일으킨 자(실화) 10. 절도, 폭행, 성희롱, 공용기물 파손 등 범죄행위자(경미한 경우) 11. 음주 등으로 인한 폭행사건 당사자 및 가해자(경미한 경우) 12. 네트워크를 이용한 바이러스 고의유포, 불법파일 공유서버 설치 운영, IP 무단도용, 해킹 등 전산망 교란행위자(경미한 경우) 13. 이성의 방을 출입하거나 출입을 허용하는 자 14. 생활관비 3회 이상 체납자 15. 생활관 담당 팀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숙박시키는 자 16. 관내 흡연 또는 호실 내 흡연 흔적이 발견되는 자 17. 지정된 장소 이외 혐오물질(토사물 등) 투척 행위를 하는 자(중대한 경우)	30
18. 천재지변,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원의 정당한 주의 및 예방 조치를 방해하거나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가. 매우 중대한 경우: 50점 나. 중대한 경우: 30점 다. 경미한 경우: 10점	10~50 (사안별)
19. 공용물품, 대여물품의 고의적인 파손, 외부반출 또는 사유화하는 자 20. 타인의 우편물 등을 무단으로 수취 또는 개봉하는 자 21. 사감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무단 입실시키는 자 22.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의 부당 소지 및 사용하는 자(조리실 이외 공간 취사행위) 23. 허용되지 않은 전기용품 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(전열기/인화물질) 24. 허가된 전기용품 사용/관리를 부주의 하는 자(전열기/인화물질 사용)	25
25. 입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 26. 지정된 장소 이외 혐오물질(토사물 등) 투척 행위를 하는 자(경미한 경우) 27. 사감 및 관계직원의 지시사항을 불복하여 이행하지 않은 자 28. 도박행위자(유사 도박행위 포함) 29. 사전승인 없이 호실을 임의 이동하는 자 30. 침실의 청소, 정돈, 청결상태가 불량한 자(쓰레기 방치 등) 31. 공용시설물을 무단 점유하는 자(복도/세탁실/휴게실 등) 32. 소음유발(고성방가 등) 행위를 하는 자	15
33. 동물을 사육하는 자(곤충/어류 포함) 34. 룸메이트의 수면을 방해하는 자(23시 이후 게임/음악/통화/컴퓨터 작업 등) 35. 지정주차 공간 이외 불법주차 하는 자(이륜/전동/자동차/ 등 일체) 36. 세탁물 이외 물건을 세탁 및 건조하는 자(실험복/신발 등) 37. 호실 부재시 냉난방기 및 기타 전기제품 전원차단을 불이행하는 자 38. 지정장소 이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하는 자	10
39. 기타 공동생활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	10~50 (사안별)

※비고

1. 위반내용 제18호 및 제39호의 경우, 사안의 판단은 소관처의 장이 하며, 생활관운영 자치

- 위원회는 의견제출이 가능함.
2. 위반내용 제18호 및 제39호의 경우, 소관처의 장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.
  3.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은 위반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, 호실내 위반사항으로서 위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호실 입사생 모두에게 해당 벌점의 7할을 부과함.
  4. 위 벌점기준에도 불구하고,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관처장의 결정에 의거 벌점을 가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.

[별표 2] <개정 1999. 2. 2, 2000. 1. 28, 2004. 8. 10, 2020. 07. 02, 2022. 06. 30.>

별점에 따른 징계내용

별 점	징 계 내 용
15점 이상	· 위반 입사생에게 경고장 발부
20점 이상	· 1개월간 퇴사(단, 징계기간 중 생활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처장의 승인을 득하고 기존 사용료의 5배를 납부한 후 입사 가능)
25점 이상	· 3개월간 퇴사(단, 징계기간 중 생활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처장의 승인을 득하고 기존 사용료의 5배를 납부한 후 입사 가능)
30점 이상	· 6개월간 퇴사(단, 징계기간 중 생활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처장의 승인을 득하고 기존 사용료의 5배를 납부한 후 입사 가능)
40점 이상	· 1년간 퇴사 (단, 징계기간 중 생활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처장의 승인을 득하고 기존 사용료의 5배를 납부한 후 입사 가능)
50점 이상	· 영구퇴사

※ 비고

1. 별점은 별점부과에 따른 징계집행여부와 무관하게 2년 단위로 누적관리함.
2. 징계기간 중 만 2년이 도래하는 경우 이미 결정된 징계조치는 징계기간까지 계속됨.
3. 위 별점징계와는 별도로, 필요시 징계관련 위원회에 징계회부 가능함.

[별표 3] <신설 1999. 2. 2, 개정 2000. 1. 28, 2004. 8. 10, 2010. 03. 26., 2020. 07. 02>

### 상 점 기 준

상 점 내 용	상점
1. 사고 예방 및 처리에 기여한 자	30점
2. 면학분위기 여건 조성 및 환경개선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	25점
3. 생활관 관리운영에 많은 기여와 공로가 있는 자(생활관 내 반입금지물품 소지자 또는 사용자 신고, 생활관 무단사용자의 거주 사실 신고 등)	20점
4. 봉사, 희생정신이 투철한 자 5. 생활관내 시설물과 물품의 정리정돈을 잘하고 아껴 쓰는 자	15점
6. 질서를 잘 지키는 등 생활관내의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(생활관장, 생활관 자치회 또는 사감 추천)	10점
-	

※상점은 2년 단위로 누적관리 한다.